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78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임호선 · 권철승 · 전용기
서삼석 · 송재봉 · 조계원
정준호 · 장종태 · 김주영
전종덕 · 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의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8조, 제61조 및 제64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약물”을 “약물·환각물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를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약물복용”을 “약물·환각물질 복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누구든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환각물질(「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61조제5호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의4 중 “제28조를”을 “제28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17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 ----- ----- ----- ----- ----- ----- ----- -----.
9.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 ~ 8. (현행과 같음)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약물·환각물질----- -----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10. (생 략)

② (생 략)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약물·환각물질 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61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제1항을-----

5의2.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6.·7. (생 략)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3. (생 략) 2의4. <u>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u> <u><신 설></u> 3. ~ 11. (생 략) ② ~ ④ (생 략)	<u>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u> 6.·7.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 ----- ----- -----.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u>제28조제1항을</u>----- ----- ----- ----- <u>2의5.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u>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